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물 의 재 이 용 촉 진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포함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의 지정 및 업무 범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제13조의2)

-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본계획 근거 마련 및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나.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제13조의3)

- 국가의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다.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제13조의4)

-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이하 “설치·운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필요성 및 목적
2. 물 수요량·공급량 및 가뭄 발생현황과 전망
3. 하·폐수처리수 현황,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이용 현황 및 공급계획
4.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개요

가. 하·폐수처리수의 대상시설

나. 재이용시설의 규모

다. 재이용시설의 위치와 부지면적

라.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기관

마. 재이용시설의 설치기간

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이용용도 및 수요처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하류 하천의 유량과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사업의 기대효과

6. 그 밖에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이용시설의 시설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재이용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3. 재이용시설의 부지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재이용시설의 설치기간이 2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의4(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①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2.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규모·위치 등은 그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너목 위반행위란 너목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 위반행위란 더목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① (생 략) <u><신 설></u>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u>제13조의2(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등)</u> 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이하 “설치·운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u>설치·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필요성 및 목적</u> 2. <u>물 수요량·공급량 및 가뭄 발생현황과 전망</u> 3. <u>하·폐수처리수 현황,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이용 현황 및 공급계획</u> 4. <u>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u>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u>

<신 설>

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개요

가. 하·폐수처리수의 대상시설

나. 재이용시설의 규모

다. 재이용시설의 위치와 부지면적

라.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기관

마. 재이용시설의 설치기간

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이용용도 및 수요처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

자계획

4. 하류 하천의 유량과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사업의 기대효과

6. 그 밖에 국가의 하·폐수처
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
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
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
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을 말한다.

<신 설>

1. 재이용시설의 시설용량이 10
0분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재이용시설의 위치가 변경되
는 경우

3. 재이용시설의 부지면적이 10
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재이용시설의 설치기간이 2
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의4(국가의 하·폐수처리
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①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
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
용사업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

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2.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
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16조(설치기준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
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폐
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
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
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
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설치기준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
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하·폐수처리
수 재이용시설의 규모·위치 등
은 그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
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17조(수질검사)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
공하수도관리청-----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4조에 따른 <u>공공하수도관리청</u>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 ~ 5. (생략)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u> ----- ----- ----- 3. ~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024